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계약목적) 본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5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붙임1>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7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이용자 등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영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8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대상자 : 15%
2. 의료급여 대상자 : 6%
3. 저소득 경감대상자 :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번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붙임1>

가정방문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구분	이용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방문당)	30분이상	17,450	2,620
	60분이상	25,320	3,800
	90분이상	34,120	5,120
	120분이상	43,430	6,510
	150분이상	50,640	7,600
	180분이상	57,020	8,550
	210분이상	63,530	9,530
	240분이상	70,080	10,500

구분	이용시간.종류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방문당)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8,990	13,35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12,030
	목욕차량 미이용	50,100	7,520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9%
보험료 순위 25% 이하	6%